

관리번호 56	정책시장 · 행정부시장 제도 운영				
완료구분	임기내	사업주체	김제시	추진상황	완료
예산구분	비예산	신규여부	신규사업	추진부서/팀 담당자	총무과 / 인사팀 박현규 (☎ 3109)

□ 추진방향 및 목표

- 김제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중 시장 결재사항을 부시장으로 전결 사항으로 하향 조정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간소화 추진
- 김제시장 결재사항 356건 중 142건(40%) 하향 목표

□ 사업개요


- 이행기간 : 2022. 7. ~ 2023. 3.
- 사업내용
 - 신속한 결재를 위한 전결권 하향 조정
 - 하향 조정 사항을 반영한 관련 규칙 개정

□ 공약달성 확인지표

구분		'22	'23	'24	'25	'26
사무전결 규칙 하향	목표(%)	40(142)				
	실적(%)		40(142)			
	달성률(%)		100			

□ 그간 추진사항

구분	추진계획	추진사항(실적)
2022 4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과소 대상 전수조사 재실시 ○ 자치법규 검토 및 부서의견 조회 ○ 조례·규칙 심의회 및 조례개정 공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과소 대상 전수조사 재실시 ○ 실과소별 공통항목 일원화
2023 1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치법규 검토 및 부서의견 조회 ○ 조례·규칙 심의회 및 조례개정 공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김제시사무전결처리규칙」 일부개정 계획 수립 ○ 자치법규 검토 및 부서의견 조회 ○ 조례·규칙 심의회 및 조례개정 공포

 <p>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</p> <p>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23조 및 「행정소송법」 제2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, 행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 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,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 (일부개정 2014.6.1. 규칙제4, 2019.1.30.)</p>	<p>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</p> 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23조 및 「행정소송법」 제2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, 행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 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,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 (일부개정 2014.6.1. 규칙제4, 2019.1.30.)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·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. [전문개정 2011.1.31.]</p> <p>제3조(경제재권의 배분원칙) 시장, 부서장, 국·소장, 과장·실장 포함) 임명, 임명지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. (일부개정 2021.01.19.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장의 결재사항 가.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. 주요 시책·사업의 기본방향 결정
<p>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서의견 조회('23.2.12.~2.15.)</p>	<p>「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」 일부개정 공포('23.3.30.)</p>